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5764
----------	-------

제안연월일 : 2022. 5.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 경과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경과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9956호)	김성원	2021. 5. 7.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1. 6. 2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11845호)	임종성	2021. 7. 30.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1. 9. 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나.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2. 5. 9.)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22. 5. 16.)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공공하수도의 관리주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데,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하수처리시설의 고도화,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 최근 커지고 있는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상 어려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현행 시행령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사 또는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위탁기간 동안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공하수도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자와 운영관리 중인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그 대상에 포함되는지 분명하지 않아 논란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하수도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 및 재난상황 대응을 위하여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진단 대행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 중이거나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

조의2).

나.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수도관리업무 및 관련 기술·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의3 신설).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다.

1.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2.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제6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3(유역하수도지원센터의 설립·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수도관리업무 및 관련 기술·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역하수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0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0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기술진단을 대행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진단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 ⑤ (생략)

<신설>

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① ~ ④ (생략)

<신설>

제80조(과태료) ① (생략)

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8조의3(유역하수도지원센터의 설립·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수도관리 업무 및 관련 기술·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역하수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환경부장관은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신설>

③ ~ ⑥ (생략)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제20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기술진단을 대행한 자

③ ~ ⑥ (현행과 같음)